1. 국가 산업안전보건 규제 체계

1.1 산업안전보건 규제 체계 설명

개요/인용

스페인은 복합적인 산업안전보건 규제 체계를 개발하였다.

EU의 회원국인 스페인은 EU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이 점에 있어서 EU의 여러 지침을 국내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는 국내법이 EU 지침에서 정하는 의무규정을 포함하고 개발해야 함을 뜻한다. 근로자의 안전보건 개선 조치 장려에 관한 지침 89/391/CEE와 임산부근로자 및 연소근로자 보호에 관한 지침 92/85/CEE, 94/33/CEE, 91/383/CEE가 여기에 해당한다. 작업장에서의 특정 위험에 적용되는 지침과 그밖에 스페인이 비준한 다수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ILO 협약(협약 제013호, 제062호, 제115호, 제119호, 제120호, 제127호, 제136호, 제148호, 제155호, 제162호, 제176호, 제187호)도 여기에 해당한다.

국내법에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문제에 관하여 많은 법률, 규정, 명령이 마련되어 있다.

헌법은 공공행정부에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수호할 것을 요구한다(제40.2조).

주요 산업안전보건 법문은 산재위험예방에 관한 법, 산업재해와 그 규제에 관한 법령, 예방 서비스에 관한 규정, 부문별(광업,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무엇보다도 작업장에서의 안전보건 관련 문제에 대한 최소 처분에 관한 명령 485/1977, 486/1997, 487/1997, 488/1997이다.

국가 산업안전보건 위원회와 국가 산업안전보건원은 산업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 문서, 간행물, 연구, 자문, 교육훈련 제공을 책임지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은 근로조사단이 감독한다. 감독관에게는 점검 직능을 행사함에 있어 법에 따른 거대한 권한이 주어진다.

참고자료

Ley num. 31/1995, de 8 de noviembre, de Prevencion de Riesgos Laborales
Real Decreto 1879/1996, de 2 de agosto, por el que se regula la composicion de la Comision Nacional de Seguridad y Salud
Real Decreto 39/1997, de 17 de enero, por el que se aprueba el Reglamento de

los Servicios de Prevencion
Real Decreto 486/1997, de 14 de abril, por el que se establecen las disposiciones minimas de seguridad y salud en los lugares de trabajo
Real Decreto 488/1997, de 14 de abril, sobre disposiciones minimas de seguridad y salud relativas al trabajo con equipos que incluyen pantallas de visualizacion
Real Decreto 487/1997, de 14 de abril, sobre disposiciones minimas de seguridad y salud relativas a la manipulacion manual de cargas que entrane riesgos, en particular dorsolumbares, para los trabajadores
Real Decreto 485/1997, de 14 de abril, sobre disposiciones minimas en materia de senalizacion de seguridad y salud en el trabajo

2. 적용범위 및 예외

2.1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포함한 안전보건

개요/인용
산업보건은 작업장과 작업환경에서의 위험에 관하여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근로자 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참고자료
Ley 33/2011, de 4 de octubre, General de Salud Publica (제32조)

2.2 근로자의 정의

개요/인용
사업주로 불리는 다른 자연인 또는 법적 실체의 지시에 따라, 조직범위 내에서 보수를 대가로 자진하여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에 근로자법이 적용된다.

비고/해설
산업안전보건 관련 문제에 관한 여러 가지 법과 규정이 존재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각 법은 자체의 정의와 그 적용 범위를 정하고 있는 조항을 포함한다.

참고자료
Real decreto legislativo num. 1/1995, de 24 de marzo, por el que se aprueba el texto refundido de la Ley del Estatuto de los Trabajadores. (제1조)

2.2.1 특정 분류의 근로자의 범위

2.2.1.1 이주근로자

개요/인용

스페인 내에서 활동 중인 포르투갈인, 라틴 아메리카인, 브라질인, 필리핀인, 안도라인 근로자 모두 스페인인 근로자와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 그 외 스페인 내 외국인 근로자는 산업재해에 관한 법령과 규정에 따른 혜택을 받는다.

참고자료

Decreto de 22 de junio de 1956, por el que se aprueba el reglamento para aplicacion del texto refundido de la legislacion de accidentes de trabajo (제5조)

2.2.1.2 가사근로자

개요/인용

가사근로자는 가사근로자의 특수한 근로관계를 규제하는 명령 1620/2011(2011년 11월 14일)의 적용을 받는다. 사업주는 가사 노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조치를 강구하여 가사근로자를 위한 충분히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한/의무

산재위험예방에 관한 법은 가사근로자에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자료

Ley num. 31/1995, de 8 de noviembre, de Prevencion de Riesgos Laborales (제3(4)조)

Real decreto legislativo num. 1/1995, de 24 de marzo, por el que se aprueba el texto refundido de la Ley del Estatuto de los Trabajadores. (제1(1)조)

Real Decreto-ley num. 29/2012 de mejora de gestion y proteccion social en el Sistema Especial para Empleados de Hogar y otras medidas de caracter economico y social.

Real Decreto num.1620/2011, de 14 de noviembre 2011, por el que se regula la relacion laboral de caracter especial del servicio del hogar familiar.

2.2.1.3 재택근로자

개요/인용

재택근로자는 산재위험예방에 관한 법 31/1995(11월 8일)과 그 시행규칙에 정해진 바와 같이, 충분히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에 대한 권리가 있다.

참고자료

Ley num. 31/1995, de 8 de noviembre, de Prevencion de Riesgos Laborales
Real decreto legislativo num. 1/1995, de 24 de marzo, por el que se aprueba el texto refundido de la Ley del Estatuto de los Trabajadores. (제13(4)조)

2.2.1.4 자영업자

개요/인용

동일 작업장에 2곳 이상의 회사로부터 파견된 근로자가 존재할 경우, 산업안전보건 조치를 조정, 시행하고 자영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에 알릴 의무는 원 소속회사에 있다.

참고자료

Ley num. 31/1995, de 8 de noviembre, de Prevencion de Riesgos Laborales (제24(5)조)

2.3 사업주의 정의

개요/인용

사업주는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는 자연인 또는 법적 실체로 정의된다(근로자법 제1(2)조).

농업 부문에서는 소작농, 전차인, 차지인, 또는 다른 유사한 개인 중 어느 누구를 고용하여 노동을 이용 또는 일을 실행하는 개인 또한 사업주로 인식된다.

산업안전보건 법령의 목적상 국가, 자치주 의회와 위원회, 도서 의회, 지방 자치제 당국, 지방정부협회, 기타 실체 또는 공사 또한 사업주로 간주된다.

참고자료

Decreto de 22 de junio de 1956, por el que se aprueba el reglamento para aplicacion del texto refundido de la legislacion de accidentes de trabajo
Real decreto legislativo num. 1/1995, de 24 de marzo, por el que se aprueba el texto refundido de la Ley del Estatuto de los Trabajadores. (제1(2)조)

2.4 업종별 예외

2.4.1 농업

개요/인용

산재위험예방에 관한 법과 시행규칙은 근로자법이 규제하는 근로관계와 공공행정에 종사하는 행정 또는 법정 직원의 관계 모두에 적용된다. 후자의 경우, 산재위험예방에 관한 법과 시행규칙에 명문화되어 있는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용해야 한다. 이는 특정 제조자, 수입자, 공급자들에 대해 확립된 의무와 자영업자에 대해 파생될 수 있는 권리와 의무 준수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 법은 해당되는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근로 중인 동업자가 존재하는 협동조합에도 적용된다.

참고자료

Ley num. 31/1995, de 8 de noviembre, de Prevencion de Riesgos Laborales (제 3(1)조)

2.4.2 건설업

개요/인용

건설 부문에 특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마련되어 있다.

참고자료

Real Decreto 1627/1997, de 24 de octubre, por el que se establecen disposiciones minimas de seguridad y salud en el trabajo en las obras de construccion

2.4.3 서비스업

개요/인용

산재위험예방에 관한 법과 시행규칙은 근로자법이 규제하는 근로관계와 공공행정에 종사하는 행정 또는 법정 직원의 관계 모두에 적용된다. 후자의 경우, 산재위험예방에 관한 법과 시행규칙에 명문화되어 있는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용해야 한다. 이는 특정 제조자, 수입자, 공급자들에 확립된 의무와 자영업자에 대해 파생될 수 있는 권리와 의무 준수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 법은 해당되는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근로 중인 동업자가 존재하는 협동조합에도 적용된다.

참고자료

Ley num. 31/1995, de 8 de noviembre, de Prevencion de Riesgos Laborales (제

3(1)조)

2.4.4 공공부문

개요/인용

산재위험예방에 관한 법과 시행규칙은 근로자법이 규제하는 근로관계와 공공행정에 종사하는 행정 또는 법정 직원의 관계 모두에 적용된다. 후자의 경우, 산재위험예방에 관한 법과 시행규칙에 명문화되어 있는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용해야 한다. 이는 특정 제조자, 수입자, 공급자들에 확립된 의무와 자영업자에 대해 파생될 수 있는 권리와 의무 준수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 법은 해당되는 법령을 준수하여 설립되어 근로 중인 동업자가 존재하는 협동조합에도 적용된다(제3(1)조).

제한/의무

다음 전문 직종에 대해서는 산재위험예방에 관한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 경찰, 안보기관, 세관보안기관
- 시민보호서비스와 중대한 위험 및 재난의 경우 법의학 조사
- 군대 및 군사정책에 따른 군사 활동

그러나 산재위험예방에 관한 법은 상기 활동을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 안전, 보건을 규제하는 특수 법령이 제정되도록 한다(제3(2)조).

참고자료

Ley num. 31/1995, de 8 de noviembre, de Prevencion de Riesgos Laborales (제3조)
Real Decreto num. 67/2010 de adaptacion de la legislacion de Prevencion de Riesgos Laborales a la Administracion General del Estado.
Real Decreto 1084/2014, de 19 de diciembre, por el que se modifica el Real Decreto 67/2010, de 29 de enero, de adaptacion de la legislacion de Prevencion de Riesgos Laborales a la Administracion General del Estado.

2.4.5 기타

개요/인용

국가경찰직 종사자에 대한 특정 산업안전보건 명령이 마련되어 있다.

광업 부문에 대한 최소 산업안전보건 규정을 정하는 특정 산업안전보건 명령이 마

련되어 있다.

어선 근로자에 대한 최소 산업안전보건 규정을 정하는 특정 산업안전보건 명령이 마련되어 있다.

위험물질 운반을 규제하는 명령이 마련되어 있다.

어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선원 수를 요구하는 명령이 마련되어 있다.

전기적 위험에 대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규제하는 산업안전보건 명령이 마련되어 있다.

인재주선업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요건에 관한 특정 명령이 마련되어 있다.

참고자료

Real Decreto 1389/1997, de 5 de septiembre, por el que se aprueban las disposiciones minimas destinadas a proteger la seguridad y la salud de los trabajadores en las actividades mineras
Real Decreto 1216/1997, de 18 de julio, por el que se establecen las disposiciones minimas de seguridad y salud en el trabajo a bordo de los buques de pesca
Real Decreto 2/2006, de 16 de enero, por el que se establecen normas sobre prevencion de riesgos laborales en la actividad de los funcionarios del Cuerpo Nacional de Policia
Real Decreto 216/1999, de 5 de febrero, sobre disposiciones minimas de seguridad y salud en el trabajo en el ambito de las Empresas de Trabajo Temporal
Real Decreto 258/1999, de 12 de febrero, por el que se establecen condiciones minimas sobre la proteccion de la salud y la asistencia medica de los trabajadores del mar
Real Decreto 614/2001, de 8 de junio, sobre disposiciones minimas para la proteccion de la salud y seguridad de los trabajadores frente al riesgo electrico
RD 97/2014 14 febrero, por el que se regulan las operaciones de transporte de mercancias peligrosas por carretera en territorio espanol
Real Decreto 963/2013, de 5 noviembre, por el que se fijan las tripulaciones minimas de seguridad de los buques de pesca y auxialiares de pesca y se regula el procedimiento para su asignacion

2.5 산업재해의 정의

개요/인용

산업재해는 업무에 기인해 근로자가 겪는 모든 신체적 상해로 정의된다.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a) 작업장으로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에 발생한 사고(통근 사고)
b) 근로자 대표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로 출퇴근 시 발생한 사고를 포함하여, 근로자 대표의 기능 수행 과정이나 그 결과로서 근로자 대표에 발생한 사고
c) 기업의 정확한 기능을 위해 자발적으로 또는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가 수행한 과제의 실행 과정이나 그 결과로서 발생한 사고
d)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경우, 구조 활동 또는 이와 유사한 활동 중 발생한 사고.
e) 다음 조항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근로자에 의해 계약된 질병. 단, 오직 업무로 인하여 질병에 걸린 것으로 입증된 경우
f) 근로자가 이전에 겪은 질병이 재해로 인해 유발된 상해의 결과로 악화된 경우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또는 작업장 내에서 입은 상해는 달리 입증되지 않는 한 산업재해로 간주한다.

다음과 같은 상황을 사유로 사고를 산업재해로 간주할 수 없어서는 안 된다.

a) 근로자가 자신감에 기인하여 의무의 정상 과정 준수에 태만하였을 경우
b) 사업주, 동료, 또는 제3자에 민형사상 책임이 있는 경우

제한/의무

상기 조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는 산업재해로 간주하지 않는다.

a) 업무와 무관한 불가항력에 기인한 사고
   일사병, 낙뢰, 기타 유사현상은 업무와 무관한 불가항력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b) 상해를 입은 근로자의 고의적 위법행위 또는 중과실에 기인한 사고

참고자료

Real Decreto Legislativo 1/1994, de 20 de junio, por el que se aprueba el Texto Refundido de la Ley General de la Seguridad Social (제115조)

2.6 업무상 질병의 정의

개요/인용

업무상 질병은 이 법의 시행규칙에 의해 인정된 표에 명시된 활동에서 수행한 업무의 결과로서, 표에 표기된 요소 또는 물질에 의해 근로자에 이환되는 질병으로 정의된다.

이 법의 시행규칙은 새로운 업무상 질병을 포함하는 데 있어 준수해야 하는 절차를 명문화한다. 이 절차는 보건복지평등부의 보고를 요구한다.

참고자료

Real Decreto Legislativo 1/1994, de 20 de junio, por el que se aprueba el Texto Refundido de la Ley General de la Seguridad Social (제116조)

2.6.1 업무상 질병 목록

개요/인용

업무상 질병은 이 법의 시행규칙에 의해 인정된 표에 명시된 활동에서 수행한 업무의 결과로서, 표에 표기된 요소 또는 물질에 의해 근로자에 이환되는 질병이다.

이 법의 시행규칙은 새로운 업무상 질병을 포함하는 데 있어 준수해야 하는 절차를 명문화한다. 이 절차는 보건복지평등부의 보고를 요구한다.

참고자료

Real Decreto 1299/2006, de 10 de noviembre, por el que se aprueba el cuadro de enfermedades profesionales en el sistema de la Seguridad Social y se establecen criterios para su notificacion y registro

2.6.2 그 외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상하기 위한 체계

개요/인용

업무상 질병은 이 법의 시행규칙에 의해 인정된 표에 명시된 활동에서 수행한 업무의 결과로서, 표에 표기된 요소 또는 물질에 의해 근로자에 이환되는 질병이다.

이 법의 시행규칙은 새로운 업무상 질병을 포함하는 데 있어 준수해야 하는 절차를 명문화한다. 이 절차는 보건복지평등부의 보고를 요구한다.

참고자료

Real Decreto 1299/2006, de 10 de noviembre, por el que se aprueba el cuadro de enfermedades profesionales en el sistema de la Seguridad Social y se establecen criterios para su notificacion y registro

3. 산업안전보건 관리 및 집행과 관련한 기관 및 프로그램

3.1 산업안전보건 담당 국가기관

개요/인용

근로 및 사회보장 조사단.

참고자료

Ley num. 31/1995, de 8 de noviembre, de Prevencion de Riesgos Laborales (제9조)

3.1.1 목적, 역할 및 기능

개요/인용

근로 및 사회보장 조사단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 규칙의 적용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것이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능이 부여된다.

- 예방 측면에서 작업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안전보건 법령 및 근로규정으로 간주되지 않는 법적/기술적 표준 준수 감시. 조사단은 산업안전보건 법령 위반이 증명된 경우 담당 근로당국에 제재를 요청해야 한다.
- 기업과 근로자에 산업안전보건 법령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지에 관한 자문과 정보 제공
- 산업재해와 업무상 질병에 대한 노동재판과 관련하여 사회법원의 요청에 따라 보고서 작성
- 근로당국에 치명적, 중대 산업재해 보고. 근로당국의 요청이 있을 시 기타 산업재해 보고
- 산업안전보건 의무 준수여부 확인 및 준수 장려
- 감독관이 근로자의 안전 또는 보건에 중대한 위험이 임박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즉각 업무중지 지시

참고자료

Ley num. 31/1995, de 8 de noviembre, de Prevencion de Riesgos Laborales (제 9.1조)

3.1.2 의장 및 구성

3.2 국가 산업안전보건 연구 프로그램 또는 기관

개요/인용

국가 산업안전보건원은 중앙정부의 과학기술 기관이다. 산업안전보건 주제에 대한 연구 수행 및 분석과 개선 촉진 및 지원이 주 임무이다. 이러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자치정부의 산업안전보건 담당 기관과 협력관계를 설립한다.

참고자료

Ley num. 31/1995, de 8 de noviembre, de Prevencion de Riesgos Laborales (제 8.1조)

3.2.1 목적, 역할 및 기능

개요/인용

국가 산업안전보건원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국가적 및 국제적 차원에서 규정 및 표준의 정교화에 관한 기술적 자문 제공.
- 산재위험예방에 대한 교육훈련, 정보 보급, 연구 수행 및 촉진. 적절한 경우 반드시 자치정부의 산재위험예방에 관한 기술 기관과의 조율 및 협력을 통해 이 기능을 수행한다.
-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근로 및 사회보장 조사단과 협력하여 산업안전보건 법령 집행에 대한 감시 및 감독 역할 수행.
-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국제협력 프로그램 개발에 공조하여 자치정부의 참여 촉진.
- 산업안전보건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모든 기타 절차는 국가 산업안전보건 위원회를 통하여 그 권한 범위 내에서 배정할 수 있다.

국가 산업안전보건원은 다양한 공공 기관 간의 협업을 보장하고 정보와 경험의 교류를 지원해야 한다. 반드시 담당 기관에 따라 인증, 시험, 인정에 특화된 기술지원

을 제공해야 한다.

유럽연합의 기관과 관련하여, 국가 산업안전보건원은 국가연락기관의 역할을 맡아, 특히 유럽 산업안전보건청(EASHW)과 그 네트워크에 관한 정보를 국가차원에서 조정하고 소통하도록 보장한다.

국가 산업안전보건원은 국가 산업안전보건 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한다. 국가 산업안전보건원은 국가 산업안전보건 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기술과학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3.2.2 거버넌스 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3.2.3 자금 조달원

3.3 국가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

개요/인용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국가 정책과 프로그램을 포괄하는, 각료 이사회가 인준한 "스페인 산업안전보건 전략"으로 명명된 국가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이 있었다.

비고/해설
국가 산업안전보건 위원회는 그 목적을 위해 편성된 실무진을 통해 2014-2020년을 위한 차세대 전략을 개발하고 있다. 자세한 정보는 국가 산업안전보건원 웹페이지 참조.
http://www.prevencionintegral.com/congresos/orp-2014/conferencia/retos-nueva-estrategia-espanola-seguridad-salud-e n-trabajo-2014-2020

참고자료
스페인 산업안전보건전략 2007-2012

3.3.1 국가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에 관한 협의

비고/해설
국가 산업안전보건 위원회는 그 목적을 위해 편성된 실무진을 통해 2014-2020년을 위한 차세대 전략을 개발하고 있다. 자세한 정보는 국가 산업안전보건원 웹페이지 참조.
http://www.prevencionintegral.com/congresos/orp-2014/conferencia/retos-nueva-e

strategia-espanola-seguridad-salud-e n-trabajo-2014-2020

4. 근로자 등의 안전보건을 보호하여야 하는 사업주의 의무와 책임

4.1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개요/인용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문제에 관하여 효과적으로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 사업주는 이에 상응하여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행정부 또한 공무원을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참고자료

Ley num. 31/1995, de 8 de noviembre, de Prevencion de Riesgos Laborales (제14조)

4.2 직접 고용 근로자가 아닌 자들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4.3 동일 작업장에서 2인 이상의 사업주 간의 협업

개요/인용

동일 작업장에서 2개 이상의 기업이 작업하는 경우, 양사가 산재위험예방 규정 시행에 협력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산재위험 보호 및 예방, 그리고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에 관해 필요한 조정을 확립해야 한다. 이 규정은 동일 작업장에서 작업하는 자영업자에게도 적용된다.

작업장의 소유주인 사업주는 당해 작업장에서 작업하는 다른 모든 사업주가 작업장 내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지침 수령, 상해를 입은 근로자를 이송하기 위해 실행하는 비상조치, 그리고 사업주가 취해야 하는 보호 및 예방 조치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규정은 동일 작업장에서 작업하는 자영업자에게도 적용된다.

작업 또는 서비스를 외주하여 자신의 작업장에서 실시되도록 하는 기업은 도급업자와 하도급업자가 산재위험예방 규정을 준수하는지 감시해야 한다.

제조자, 수입자, 공급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위험을 가하지 않도록 기계류, 장비,

제품, 원료의 사용 및 취급에 필요한 정보를 사업주에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는 도급업자 또는 하도급업자의 근로자가 주 작업장 외의 장소에서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도 적용된다. 단, 근로자가 발주 기업이 제공하는 기계류, 장비, 제품, 원료, 또는 공구를 사용해야 한다.

동일 작업장에서 작업하는 다양한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 법령이 요구하는 의무를 충족하는 데 있어 협력해야 하는 의무는 규정으로 개발된다.

참고자료

Ley num. 31/1995, de 8 de noviembre, de Prevencion de Riesgos Laborales (제24조)

4.4 작업 관련 근로자의 보건 감독

개요/인용

사업주는 업무가 수반하는 위험에 대하여 정기 근로자 보건의료 감독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Ley num. 31/1995, de 8 de noviembre, de Prevencion de Riesgos Laborales, 제22조)

사업주는 업무상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정기적으로 사전 보건의료 감독이 제공되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각 업무상 질병별로 특정되는 보건 감독 요건은 고용사회보장부가 정한다.
(Real Decreto Legislativo 1/1994, de 20 de junio, por el que se aprueba el Texto Refundido de la Ley General de la Seguridad Social, 제196.1조)

비고/해설

특정 보건의료 감독 처분은 위험을 수반하는 직종 대부분에 대한 규정에 포함되어 있다. 광부, 공기 압축장치 내에서 작업하는 근로자, 수중 근로자, 이온화 방사선에 노출되는 근로자, 스크린 작업 근로자, 생물학적 위험 대상인 근로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모든 관련 법령은 국가 산업안전보건원의 웹사이트(http://www.insht.e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자료

Ley num. 31/1995, de 8 de noviembre, de Prevencion de Riesgos Laborales (제22조)
Real Decreto Legislativo 1/1994, de 20 de junio, por el que se aprueba el Texto

Refundido de la Ley General de la Seguridad Social (제196.1조)

4.4.1 감독이 요구되는 특정 유해성

개요/인용
특정 위험에 노출된 근로자에 제공해야 하는 보건 감독을 정하는 고용사회보장부령이 마련되어 있다.

참고자료
Orden de 12 de enero de 1963 por el que se aprueban las normas reglamentarias de caracter medico por las que se han de regir los reconocimientos, diagnostico y calificacion de las enfermedades profesionales

4.5 작업 환경 및 작업 관행의 감독

개요/인용
사업주는 작업장에서의 위험평가(작업장에서 시행해야 하는 위험예방계획의 필수적 부분) 결과에 따라 요구될 시,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황과 위험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작업 환경과 근로자의 활동을 정기적으로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참고자료
Ley num. 31/1995, de 8 de noviembre, de Prevencion de Riesgos Laborales (제16.2.a조)

4.6 개인보호구 제공 의무

개요/인용
사업주는 작업장비가 수행해야 하는 작업에 적합하며,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목적에 올바르게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근로자가 자신의 안전보건에 대한 특정 위험에 관련될 수 있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는 경우 사업주가 취해야 하는 조치는 다음과 같다.

- 장비의 사용 인가는 당해 장비를 취급해야 하는 근로자만으로 제한한다.
- 장비의 유지보수와 관련된 작업은 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실시하도록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신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근로자에

제공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개인보호구는 위험을 예방할 수 없거나, 종합적 보호를 위한 기술적 수단이나 기업 조직의 조치, 방법, 절차 등으로 충분히 제한할 수 없을 때 반드시 사용한다.

참고자료

Ley num. 31/1995, de 8 de noviembre, de Prevencion de Riesgos Laborales (제17조)

Real Decreto 773/1997, de 30 de mayo sobre disposiciones minimas de seguridad y salud relativas a la utilizacion por los trabajadores de equipos de proteccion individual

4.7 개인보호구 사용 의무

개요/인용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신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근로자에 제공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참고자료

Ley num. 31/1995, de 8 de noviembre, de Prevencion de Riesgos Laborales (제17.2조)

4.8 응급처치 및 복지시설 제공 의무

4.8.1 응급처치의 준비

개요/인용

사업주는 잠재적 응급상황, 작업장에서 실행되는 활동과 그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응급처치 체계를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업주는 필요시 효과적이고 즉각적인 응급처치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외 서비스와의 관계를 수립해야 한다.

(Ley num. 31/1995, de 8 de noviembre, de Prevencion de Riesgos Laborales, 제20조)

응급처치 물품 및 구역의 사용, 분배, 관리에 관한 여러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Real Decreto 486/1997, de 14 de abril, por el que se establecen las disposiciones minimas de seguridad y salud en los lugares de trabajo, 부록 VI)

참고자료

Ley num. 31/1995, de 8 de noviembre, de Prevencion de Riesgos Laborales (제20조)

Real Decreto 486/1997, de 14 de abril, por el que se establecen las disposiciones minimas de seguridad y salud en los lugares de trabajo (부록 VI)

4.8.2 위생설비

개요/인용

법에 명시된 탈의실, 개수대, 화장실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가 특수 작업복을 착용해야 하며, 보건상의 사유로 작업장에 지정된 특수 구역 외 다른 구역에서는 환복이 제한되는 경우 작업장에 탈의실이 마련되어야 한다.

2. 탈의실에는 좌석과 옷과 신발을 보관할 수 있는 용량의 잠금장치가 있는 옷장/사물함이 설비되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작업복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작업복용 옷장/사물함과 작업복 외 의복용 옷장/사물함을 구분하도록 한다.

3. 작업장에 탈의실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옷을 수납할 수 있는 옷장이나 옷걸이가 제공되어야 한다.

4. 작업장은 탈의실과 더불어 거울이 달린 화장실, 필요 시 온수가 나오는 수도가 있는 개수대, 비누, 개인 수건 또는 기타 건조 시스템 등을 제공해야 한다. 통상 작업 활동이 먼지, 오염, 발한 등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냉온수가 공급되는 샤워실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에 필수 세정용품을 제공하도록 한다.

5. 탈의실과 화장실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호 간 출입이 용이해야 한다.

6. 작업장에 휴게실, 탈의실, 변기 구역이 통합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작업 위치와 가까운 곳에 개수대가 설비된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7. 화장실은 물과 휴지를 자동 배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여성용 화장실에는 특별 용기를 비치해야 한다.

8. 탈의실, 화장실, 좌석, 벽장/사물함, 선반, 개수대, 샤워실, 변기 등은 근로자가 어려움이나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항상 동시 사용자 수를 고려해야 한다.

9. 상기 규정에서 언급한 구역, 설비, 장비 등은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청소와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10. 탈의실과 화장실은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이러한 구역은 정해진 용도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참고자료

Real Decreto 486/1997, de 14 de abril, por el que se establecen las disposiciones minimas de seguridad y salud en los lugares de trabajo (부록 V.2)

4.8.3 식수

개요/인용

작업장은 사용이 용이한 깨끗한 식수를 제공해야 하며, 반드시 식수의 오염을 예방해야 한다.

참고자료

Real Decreto 486/1997, de 14 de abril, por el que se establecen las disposiciones minimas de seguridad y salud en los lugares de trabajo (부록 V.1)

4.8.4 휴게실 및 식당

개요/인용

1.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필요한 경우 휴게실 이용이 용이하여야 한다.

2. 상기 규정은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위와 동등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3. 화장실 공간과 탁자 및 등받이가 있는 의자의 수는 이를 동시에 사용하는 근로자 수에 맞춰 비치되어야 한다.

4. 임신부 근로자와 수유 여성은 적절한 환경에서 누운 자세로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장에 휴게실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작업이 규칙적으로 또는 수시로 중단되거나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필요한 경우 특별 지정된 구역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6. 작업장에 침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근로자가 적절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자료

Real Decreto 486/1997, de 14 de abril, por el que se establecen las disposiciones minimas de seguridad y salud en los lugares de trabajo (부록 V.3)

5.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산업안전보건 관리 원칙 및 관행에 따라 예방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사업주의 의무

5.1 산업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제반 요소

5.1.1 안전보건의 책임 및 준비사항을 구체화하는 정책 또는 계획

개요/인용

위험예방 계획은 기업의 운영체계 전반에 걸친 예방 활동을 통합하여 산재위험예방에 관한 기업 정책을 수립하는 도구이다.

위험예방 계획은 기업의 행정부가 승인해야 하고, 모든 근로자에 전파되어야 한다.

위험예방 계획은 반드시 문서에 반영되어 근로당국, 보건당국, 근로자 대표가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문서는 기업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 업무상 유해성 예방에 관련하여, 기업과 기업의 생산 활동, 작업장의 수와 특성, 근로자의 수와 특성 식별.
- 업무상 유해성 예방과 관련하여, 각자가 맡은 역할과 책임 및 상호 간 의사소통 채널을 식별하는 기업의 조직구조.
- 업무상 유해성 예방과 관련하여, 다양한 기술공정, 기업 내 조직적 절차 및 관행을 식별하는 면에서 생산 조직.
- 선택된 예방 양식 및 대표 단체 표시를 포함하는 기업 내 위험예방 조직.

- 기업이 달성해야 할 위험예방 정책, 목적, 목표와 이를 위해 이용되는 인적, 기술적, 물질적, 경제적 자원.

비고/해설

이 규정은 여러 문제들 중에서도 착수가 필요한 필수 위험예방 활동을 정하는 산재 위험예방에 관한 법의 제16.1조에 언급된 규정이다.

참고자료

Real Decreto 39/1997, de 17 de enero, por el que se aprueba el Reglamento de los Servicios de Prevencion (제2조)

5.1.2 안전보건 담당자 임명

개요/인용

10인 미만의 기업에서는 법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주가 직접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관리책임을 맡을 수 있다. 그 외의 경우 사업주는 작업장에서의 산업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책임을 1인 이상의 근로자 또는 위험예방서비스에 할당해야 할 의무가 있다.

참고자료

Real Decreto 39/1997, de 17 de enero, por el que se aprueba el Reglamento de los Servicios de Prevencion (제11조~제12조)

5.1.3 위험성 평가서

개요/인용

사업주는 실시한 위험평가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참고자료

Ley num. 31/1995, de 8 de noviembre, de Prevencion de Riesgos Laborales (제23.b조)

5.1.4 안전한 작업 체계 및 절차

개요/인용

위험을 제거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이전 위험평가에 기초한 적절한 예방 조치를 위험예방에 대한 계획에 마련해야 한다.

참고자료

Ley num. 31/1995, de 8 de noviembre, de Prevencion de Riesgos Laborales (제16.2.b조)

5.1.5 위험성 교육훈련 및 안내

개요/인용

사업주는 모든 근로자의 고용 당시 및 근로자가 수행하는 기능에 변경이 있을 시, 또는 작업 장비에 신기술 도입이나 변경이 있을 시 위험예방에 대한 적절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훈련은 각 근로자의 작업 또는 기능에 명확한 초점을 두고 있어야 하며, 진화하는 위험에 맞춰 조정되어야 한다.

교육훈련은 근로시간 중 가능한 때, 또는 근로시간 중에 불가할 시 아무 시간에 제공되어야 한다. 후자의 경우 교육훈련에 할애한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감면되어야 한다.

교육훈련은 기업에서 자체의 자원을 통하거나 사외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다.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은 무상으로 제공된다.

참고자료

Ley num. 31/1995, de 8 de noviembre, de Prevencion de Riesgos Laborales (제19조)

5.1.6 예방조치 결과의 검토 또는 평가

개요/인용

작업장에서의 산업안전보건 예방체계 감사를 규정하는 데 이 법의 본문 중 한 장 전체를 할당하였다.

참고자료

Real Decreto 39/1997, de 17 de enero, por el que se aprueba el Reglamento de los Servicios de Prevencion (제29조~제33조)

5.1.7 안전보건에 관한 근로자들과의 협의

개요/인용

사업주는 모든 산업안전보건 문제에 대해 근로자에게 알리고 협의해야 할 것이 법으로 요구된다(제18조).

이 법은 한 장 전체를 통해 근로자와의 협의 및 참여에 관한 규정을 제공한다(제33조~제40조).

참고자료

Ley num. 31/1995, de 8 de noviembre, de Prevencion de Riesgos Laborales (제18조, 제33조~제40조)

5.2 특정 산업안전보건 관리 체계 또는 기준을 이행할 의무

개요/인용

기업의 경영체계 전반에 걸쳐 위험예방 계획을 시행할 것이 법으로 요구된다. 사업주는 상기 명시된 작업장에서의 산업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모든 요건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위험예방 계획은 기업의 행정부가 승인해야 하고, 모든 근로자에 전파되어야 한다.

위험예방 계획은 반드시 문서에 반영되어 근로당국, 보건당국, 근로자 대표가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문서는 기업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 업무상 유해성 예방에 관련하여, 기업과 기업의 생산 활동, 작업장의 수와 특성, 근로자의 수와 특성 식별.
- 업무상 유해성 예방과 관련하여, 각자가 맡은 역할과 책임 및 상호 간 의사소통 채널을 식별하는 기업의 조직구조.
- 업무상 유해성 예방과 관련하여, 다양한 기술공정, 기업 내 조직적 절차 및 관행을 식별하는 면에서 생산 조직.
- 선택된 예방 양식 및 대표 단체 표시를 포함하는 기업 내 위험예방 조직.
- 기업이 달성해야 할 위험예방 정책, 목적, 목표와 이를 위해 이용되는 인적, 기술적, 물질적, 경제적 자원.

참고자료

Real Decreto 39/1997, de 17 de enero, por el que se aprueba el Reglamento de los Servicios de Prevencion (제2조)

6. 산업안전보건 관련 전문성 및 역량의 가용성을 확보해야 하는 사업주의 의무

6.1 산업안전보건 역량

비고/해설
작업장에서의 산업안전보건 관리를 담당하는 전문가들의 산업안전보건 전문지식과 자격에 관한 복잡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6.1.1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가 자문 및 지원에 대한 요건

개요/인용
이 법을 통해 제공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 사업주는 이 법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접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관리책임을 맡을 수 있다.
- 사업주는 작업장에서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관리책임을 1인 이상의 근로자에 할당할 수 있다.
- 사업주는 (근로당국이 승인한) 사외 위험예방 서비스에 외주할 수 있다.
- 사업주는 사내 위험예방 서비스를 자체 창설할 수 있다.

사업주가 상기 방식 각각을 사용해야 할 때가 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 예방체계 관리에 배정된 근로자가 반드시 적격해야 할 것을 요구하며, 필수 자격요건을 상세하게 명시한다. 사내/사외 예방 서비스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구이다.

참고자료
Real Decreto 39/1997, de 17 de enero, por el que se aprueba el Reglamento de los Servicios de Prevencion (제10조~제22조)

6.1.1.1 전문가 또는 전문 서비스의 자격 요건

개요/인용
법은 산업안전보건 예방체계를 관리에 배정된 근로자가 반드시 적격해야 함을 요구하며, 필수 자격요건, 역량, 자원을 상세하게 명시한다(제13조).

사내/사외 예방 서비스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구이다. 조직 구성, 물적/인적 자원에 관한 다수의 요건이 법에 명시되어 있다(제15조, 제17조, 제18조).

이와 동시에 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다양한 형태의 기능을 초급, 중급, 고급으로 분류하고, 기능의 수준과 복잡성에 따라 담당자에 요구되는 필수 자격요건을 정하기 위해 본문 중 하나의 장(챕터)을 할애한다(제34조~제37조).

참고자료

Real Decreto 39/1997, de 17 de enero, por el que se aprueba el Reglamento de los Servicios de Prevencion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34조~제37조)

6.2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임명

개요/인용

10인 미만의 기업에 한하여 사업주가 작업장에서 직접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관리책임을 맡을 수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근로자 또는 사내/외 예방 서비스가 산업안전보건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배정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 관리를 담당하는 근로자와 사내/외 예방 서비스는 법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비고/해설

따라서 작업장에서의 산업안전보건 관리를 담당하는 전문가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참고자료

Real Decreto 39/1997, de 17 de enero, por el que se aprueba el Reglamento de los Servicios de Prevencion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34조~제37조)

6.2.1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임명이 요구되는 종업원 수

개요/인용

10인 미만의 기업에 한하여 사업주가 작업장에서 직접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관리책임을 맡을 수 있다. 사업주가 직접 산업안전보건 관리책임을 맡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법이 명시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 있어서 법은 본문 중 하나의 장(챕터)을 할애하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다양한 형태의 기능을 초급, 중급, 고급으로 분류하고, 기능의 수준과 복잡성에 따라 담당자에 요

구되는 필수 자격요건을 정립한다. 그 외의 경우에는 근로자 또는 사내/외 예방 서비스가 산업안전보건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배정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 관리를 담당하는 근로자와 사내/외 예방 서비스는 반드시 법에 명시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참고자료
Real Decreto 39/1997, de 17 de enero, por el que se aprueba el Reglamento de los Servicios de Prevencion (제11조)

7. 근로자의 권리 및 의무

7.1 자신의 안전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합당한 조치를 취할 의무

개요/인용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효과적으로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

근로자는 위험예방을 위해 마련된 모든 방안을 준수하고, 이러한 방안들을 전반적으로 준수하도록 관리하여 자신과 타인의 안전보건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참고자료
Real Decreto 39/1997, de 17 de enero, por el que se aprueba el Reglamento de los Servicios de Prevencion (제14조)

7.2 타인의 안전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합당한 조치를 취할 의무

개요/인용
근로자는 위험예방을 위해 마련된 모든 방안을 준수하고, 이러한 방안들을 전반적으로 준수하도록 관리하여 자신과 타인의 안전보건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참고자료
Real Decreto 39/1997, de 17 de enero, por el que se aprueba el Reglamento de los Servicios de Prevencion (제29.1조)

7.3 타인의 안전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감독자의 의무

개요/인용
산업안전보건 대표자는 산업안전보건 법령 준수를 감독하고 감시할 자격이 있다.

근로자가 자신의 안전보건에 임박한 위험에 노출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위험 또는 상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법정 대리인들은 다수결을 통해 이러한 위험에 영향을 받은 근로자들의 작업 중지를 합의할 수 있다. 이러한 휴업 합의는 즉시 기업과 근로당국으로 보고되며, 근로당국은 24시간 이내에 휴업 합의를 승인하거나 무효화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 대표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 대표에 작업 중지를 제안할 권리가 있다.

참고자료
Ley num. 31/1995, de 8 de noviembre, de Prevencion de Riesgos Laborales (제36.1 d조, 제21.1, 21.3, 및 36.2.g조)

7.4 타인의 안전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상위직급자의 의무

7.5 자신 및 타인의 안전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자영업자의 의무

7.6 산업안전보건 관련 요건의 준수 의무

개요/인용
근로자는 모든 산업안전보건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참고자료
Real decreto legislativo num. 1/1995, de 24 de marzo, por el que se aprueba el texto refundido de la Ley del Estatuto de los Trabajadores. (제19.2조)

7.7 위험성 및 예방조치에 관해 질문할 권리

개요/인용
근로자는 근로자 대표를 통해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보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참고자료

Ley num. 31/1995, de 8 de noviembre, de Prevencion de Riesgos Laborales (제 36.2.b,c,d조)

7.8 위험 상황에서 피신할 권리

개요/인용

근로자는 자신의 생명이나 건강에 대한 임박한 위험이 있는 상황에 처해져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 작업장에서 피신할 권리가 있다.

참고자료

Ley num. 31/1995, de 8 de noviembre, de Prevencion de Riesgos Laborales (제 21.2조)

7.9 유해하지 않은 직무로의 전환배치 권리

개요/인용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작업장을 바꾸는 것은 법이 요구하는 산업안전보건 의무를 준수함에 있어 따라야 하는 원칙으로서 정리되어 있다.
(Ley num. 31/1995, de 8 de noviembre, de Prevencion de Riesgos Laborales, 제 15.1.d조)

근로자의 신체적 또는 심리적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환경에 근로자를 배치하거나 근속시키는 행위는 법적으로 매우 중대한 위반인 것으로 간주된다.
(Real Decreto Legislativo 5/2000, de 4 de agosto, por el que se aprueba el texto refundido de la Ley sobre Infracciones y Sanciones en el Orden Social, 제13.4조)

참고자료

Ley num. 31/1995, de 8 de noviembre, de Prevencion de Riesgos Laborales (제 15.1.d조)
Real Decreto Legislativo 5/2000, de 4 de agosto, por el que se aprueba el texto refundido de la Ley sobre Infracciones y Sanciones en el Orden Social (제13.4조)

7.9.1 근로자가 유해하지 않은 직무로 전환배치 되지 않는 경우, 보상을 받고 퇴직할 권리

개요/인용

사업주가 사업주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법이 규정하는 보상을 받고 퇴직할 권리가 있다.

비고/해설
사업주가 근로자에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이 규정이 적용된다.

참고자료
Real decreto legislativo num. 1/1995, de 24 de marzo, por el que se aprueba el texto refundido de la Ley del Estatuto de los Trabajadores. (제50조)

8.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협업 및 협조

8.1 국가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또는 유사 기관

개요/인용
국가 산업안전보건 자문위원회는 1995년 법에 따라 설립되었다. 국가 산업안전보건 자문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 예방정책 설계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기타 산업안전보건 관련 문제에 참여하는 행정부의 자문기관으로 정의된다.

참고자료
Ley num. 31/1995, de 8 de noviembre, de Prevencion de Riesgos Laborales (제13.1조)

8.1.1 목적, 역할 및 기능

개요/인용
국가 산업안전보건 자문위원회는 산재위험 예방에 관한 법 제7, 8, 9, 11조에 언급되어 있는 산업안전, 기술자문, 감시 및 감독의 촉진을 위해 관할 공공기관이 개발한 활동에 참여하고, 이러한 활동과 관련해 보고하고 제안을 상정할 권리가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을 중심으로 한다.

- 활동의 기준 및 프로그램
- 일반 규정
- 근로 문제의 관할 공공기관들이 수행하는 활동의 조정
- 근로, 보건, 산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간 조정

참고자료

Ley num. 31/1995, de 8 de noviembre, de Prevencion de Riesgos Laborales (제 13.3조)

8.1.2 구성 및 위원장

개요/인용

국가 산업안전보건 자문위원회는 스페인의 자치정부별 대표자 1인, 이와 동일한 수의 중앙정부 구성원, 같은 수의 사업주 연합 대표자 및 노동조합 대표자가 한데 모여 구성된다(삼자 협의체이다).

국가 산업안전보건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그룹별로 한 명씩 부위원장 4인(자치정부, 중앙정부, 사업주 연합 대표자, 노동조합 대표자 단체별 각 1인)을 선임한다. 위원장은 고용근로관계 사무총장이 맡는다. 중앙정부 그룹의 부위원장은 보건 및 소비자이사회 사무처장이 맡는다.

구성에 대한 상세 정보는 국가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구성을 정하는 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자료

Ley num. 31/1995, de 8 de noviembre, de Prevencion de Riesgos Laborales (제 13.2조)

Real Decreto 1879/1996, de 2 de agosto, por el que se regula la composicion de la Comision Nacional de Seguridad y Salud

8.2 위험성에 관해 근로자와 협의해야 할 사업주의 의무

개요/인용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결정을 채택함에 있어 반드시 근로자와 협의해야 한다.

- 사내 작업계획 및 구성, 신기술 도입 및 그로 인한 작업의 안전보건에 미치는 영향(장비 선택, 작업환경 결정, 직장에서의 환경요인의 영향 등이 야기하는 영향)
- 산업안전보건 활동 조직 및 개발
- 응급조치에 대한 책임이 있는 근로자 배치
- 법으로 요구되는 보고 절차 및 문서화
- 위험예방에 관한 교육훈련 활동 조직

-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타 모든 활동

근로자 대표가 존재하는 기업에서는 이들 대표자들과 상기 언급한 협의를 수행해야 한다.

참고자료
Ley num. 31/1995, de 8 de noviembre, de Prevencion de Riesgos Laborales (제33조)

8.3 안전보건 관련 대표자를 선임할 근로자의 권리

개요/인용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법적으로 6인 이상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기업 또는 작업장은 대표자를 통하는 방식의 근로자 참여가 요구된다.
기업위원회, 산업안전보건 대표, 노동조합 대표가 산업안전보건 문제에 관하여 근로자를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 법이 인정하는 근로자 대표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 정보 요청
- 협의 및 교섭
- 감시 및 감독
- 사업주 또는 기업 법정 기소

(Ley num. 31/1995, de 8 de noviembre, de Prevencion de Riesgos Laborales, 제34조)

근로자 대표와 기업위원회의 위원은 모든 근로자가 자유, 직접, 비밀 투표권을 행사해 선출한다.
(Real decreto legislativo num. 1/1995, de 24 de marzo, por el que se aprueba el texto refundido de la Ley del Estatuto de los Trabajadores, 제69조)

비고/해설
스페인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 “예방 대표자”는 “산업안전보건 대표자”를 지칭한다.

참고자료
Ley num. 31/1995, de 8 de noviembre, de Prevencion de Riesgos Laborales (제34조)

Real decreto legislativo num. 1/1995, de 24 de marzo, por el que se aprueba el texto refundido de la Ley del Estatuto de los Trabajadores. (제69조)

8.3.1 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기 위한 종업원 수 조건

개요/인용

법적으로 6인 이상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기업 또는 작업장은 대표자를 통하는 방식의 근로자 참여가 요구된다.

법에서 산업안전보건 대표자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문제에 관한 특정 능력을 가진 근로자 대표를 나타낸다. 산업안전보건 대표자의 수는 작업장의 근로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

근로자 수 50-100인 작업장: 산업안전보건 대표자 2인
근로자 수 101-500인 작업장: 산업안전보건 대표자 3인
근로자 수 501-1000인 작업장: 산업안전보건 대표자 4인
근로자 수 1001-2000인 작업장: 산업안전보건 대표자 5인
근로자 수 2001-3000인 작업장: 산업안전보건 대표자 6인
근로자 수 3001-4000인 작업장: 산업안전보건 대표자 7인
근로자 수 4000인 초과인 작업장: 산업안전보건 대표자 8인

비고/해설

스페인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 “예방 대표자”는 “산업안전보건 대표자”를 지칭한다.

참고자료

Ley num. 31/1995, de 8 de noviembre, de Prevencion de Riesgos Laborales (제34, 35조)

8.3.2 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대표의 적격성 조건

개요/인용

산업안전보건 대표자로 선출되는 데 구체적인 자격요건이 요구되지는 않지만,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 대표자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로 하는 자원과 훈련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사업주에 부과한다.

교육훈련 세션은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하여 직접 제공하거나, 산업안전보건 관련

전문 기관과 협의를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 교육훈련은 진화하는 작업장에서의 산재위험과 새로이 부상하는 위험에 맞춰 조정되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참고자료

Ley num. 31/1995, de 8 de noviembre, de Prevencion de Riesgos Laborales (제37.2조)

8.4 산업안전보건 대표자의 기능, 권리 및 권한

8.4.1 작업장 검사권

개요/인용

산업안전보건 대표자는 작업장을 방문하여 작업환경을 감시할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 대표자는 법에 따라 근로시간 중 작업장의 모든 구역에 출입하며 근로자와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참고자료

Ley num. 31/1995, de 8 de noviembre, de Prevencion de Riesgos Laborales (제36.2.e조)

8.4.2 산업안전보건 정보 접근권

개요/인용

산업안전보건 대표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작업환경과 관련하여 기능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 및 문서에 대한 접근권(법에 명시된 사생활 보호권 적용)
- 사업주를 통해 근로자의 보건에 발생한 손상 또는 상해에 관해 알 권리. 근로시간 외에도 손상 또는 상해가 발생한 장소 방문 허용
-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 관리 및 위험예방을 위한 사내 책임자 또는 단체로부터 입수한 모든 정보를 입수할 권리

참고자료

Ley num. 31/1995, de 8 de noviembre, de Prevencion de Riesgos Laborales (제36.2.b,c,d조)

8.4.3 면담 출석권

8.4.4 산업안전보건 전문가의 전문적 지원을 받을 권리

개요/인용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 대표자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로 하는 자원과 훈련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사업주에 부과한다.

참고자료
Ley num. 31/1995, de 8 de noviembre, de Prevencion de Riesgos Laborales (제 37.2조)

8.4.5 감독관 동행권

개요/인용
산업안전보건 대표자(산업안전보건 위원회, 산업안전보건 대표자, 또는 근로자 대표)는 감독관이 작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동안 동행할 권리가 있다.

참고자료
Ley num. 31/1995, de 8 de noviembre, de Prevencion de Riesgos Laborales (제 40.2조)

8.4.6 시설 사용권

개요/인용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 대표자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로 하는 자원과 훈련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사업주에 부과한다.

비고/해설
"자원"이란 산업안전보건의 기능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설비를 포함해 모든 종류의 수단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참고자료
Ley num. 31/1995, de 8 de noviembre, de Prevencion de Riesgos Laborales (제 37.2조)

8.4.7 직무수행을 위한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

개요/인용

산업안전보건 대표자가 산업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월 단위로 유급 처리 시간이 주어진다. 법이 산업안전보건 활동에 대해 할당하는 근로시간은 작업장의 근로자 수에 의해 정해진다.

- 근로자 수 100인 이하: 15시간
- 근로자 수 101-250인: 20시간
- 근로자 수 251-500인: 30시간
- 근로자 수 501-750인: 35시간
- 근로자 수 751인 이상: 40시간

참고자료

Ley num. 31/1995, de 8 de noviembre, de Prevencion de Riesgos Laborales (제 37.1, 68조)

8.4.8 시정통지 교부권

개요/인용

산업안전보건 대표자는 사업주에 예방조치를 도입하고 산업안전보건 보호 수준을 개선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 사업주와 산업안전보건 위원회에 제안을 상정하여 토론할 수 있다.

참고자료

Ley num. 31/1995, de 8 de noviembre, de Prevencion de Riesgos Laborales (제 36.2.f조)

8.4.9 사업주와 협의하여 산업안전보건 문제를 해결할 권리

개요/인용

산업안전보건 대표자는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권한은 없으나, 산업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제안을 상정할 권리가 있다.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 환경의 개선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대표자의 요구를 거부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러한 결정의 타당성을 제시해야 한다.

참고자료

Ley num. 31/1995, de 8 de noviembre, de Prevencion de Riesgos Laborales (제

36.2.f, 36.4조)

8.4.10 위험한 작업의 중지를 지시할 권리

개요/인용

근로자가 자신의 안전보건에 임박한 위험에 노출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위험 또는 상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법정 대리인들은 다수결을 통해 이러한 위험에 영향을 받은 근로자들의 작업 중지를 합의할 수 있다. 이러한 휴업 합의는 즉시 기업과 근로당국으로 보고되며, 근로당국은 24시간 이내에 휴업 합의를 승인하거나 무효화한다. 산업안전보건 대표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 대표에 작업 중지를 제안할 권리가 있다.

참고자료

Ley num. 31/1995, de 8 de noviembre, de Prevencion de Riesgos Laborales (제21.1, 21.3, 36.2.g조)

8.5 사외 근로자 대표가 작업장의 산업안전보건 문제에 의견을 개진할 권리

8.5.1 작업장 출입권

개요/인용

주, 자치지방 또는 국가 차원의 노동조합원은 당해 노동조합이 조직한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작업장에 출입할 권리가 있다. 반드시 사업주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하고, 생산 공정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참고자료

Ley Organica 11/1985, de 2 de agosto, de Libertad Sindical (제9.1.c조)

8.5.2 산업안전보건 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사안을 조사할 권리

8.5.3 근로자들과 협의할 권리

8.5.4 근로자들에게 조언할 권리

8.5.5 강제이행 조치를 개시할 권리

8.6 산업안전보건 공동위원회

개요/인용
산업안전보건 위원회는 기업이 시행한 산업안전보건 및 위험예방 활동에 대한 정기 협의를 주 임무로 하는 공동협의체이다. 근로자 수가 50인 초과인 기업은 의무적으로 산업안전보건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참고자료
Ley num. 31/1995, de 8 de noviembre, de Prevencion de Riesgos Laborales (제38조)

8.6.1 근로자 대표의 산업안전보건 공동위원회 참여

개요/인용
산업안전보건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 대표자의 수와 사업주/사업주 대표의 수를 동수로 하여 구성된다.

산업안전보건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노동조합의 대표와 산업안전보건 관리를 담당하는 전문가는 투표권은 없으나 발언권을 가지고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회의에 참여한다. 기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특정 자격을 보유하였거나 귀중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근로자 또한 대표자들의 요청이 있을 시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참고자료
Ley num. 31/1995, de 8 de noviembre, de Prevencion de Riesgos Laborales (제38.2조)

8.6.2 산업안전보건 공동위원회 설치 조건

개요/인용
근로자 수가 50인 초과인 기업은 의무적으로 산업안전보건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참고자료

Ley num. 31/1995, de 8 de noviembre, de Prevencion de Riesgos Laborales (제38.2조)

8.6.3 산업안전보건 공동위원회의 목적, 역할 및 기능

개요/인용

산업안전보건 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 기업의 위험예방 계획의 개발, 이행, 평가에 참여.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 위원회는 계획 이행에 앞서 기업의 조직형태 선택, 사내/외 예방 서비스에 의해 수행될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기획, 작업 조직, 신기술 도입, 보호 및 예방활동의 조직 및 개발,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훈련 조직 등에 관해 토의한다.
- 효과적인 위험예방을 위한 방법 및 절차에 대한 발의 촉진, 기업에 환경 개선 또는 결함의 시정 제의.

산업안전보건 위원회는 그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 작업장에서의 위험예방에 관한 상황을 인지하고, 그를 위한 충분한 현장 방문 실시.
- 예방 서비스의 활동뿐 아니라 기능 수행에 필요한 작업 환경에 관한 문서 및 보고서에 대한 접근.
- 손상의 근원을 분석하여 적절한 예방조치를 제시하기 위한, 근로자의 건강 또는 신체적 온전성에 발생한 손상 분석.
- 예방 서비스의 보고와 연례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참고자료

Ley num. 31/1995, de 8 de noviembre, de Prevencion de Riesgos Laborales (제39조)

8.6.4 산업안전보건 공동위원회 업무 기록

개요/인용

법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 위원회는 반드시 자체 운영규칙을 도입해야 한다.

참고자료

Ley num. 31/1995, de 8 de noviembre, de Prevencion de Riesgos Laborales (제38.3조)

8.6.5 산업안전보건 공동위원회 의사록 공유

8.7 산업안전보건 공동위원회 위원들의 의무 교육

개요/인용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 대표자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로 하는 자원과 훈련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사업주에 부과한다.

비고/해설

산업안전보건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 대표자와 사업주 대표로 구성된다. 따라서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 위원회의 위원들에게도 적용된다.

참고자료

Ley num. 31/1995, de 8 de noviembre, de Prevencion de Riesgos Laborales (제37.2조)

8.8 보복으로부터의 보호

개요/인용

근로자 대표와 산업안전보건 대표자는 단체협약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다음과 같은 보장을 받는다.

- 이전에 근로자에 전개된 징계절차가 존재하는 경우 이와 모순된 절차 추진.
- 기술적 또는 경제적 사유로 인한 해고가 발생할 경우, 산업안전보건 대표자는 마지막으로 해고되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 대표자를 임기 중, 그리고 산업안전보건 활동에 참여 중이거나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따른 권리를 행사 중인 경우 이를 근거로 1년 이내에 해고 또는 정직에 처할 수 없다. 대표자로서의 기능을 이유로 경제적 또는 전문적 승진에 대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참고자료

Real decreto legislativo num. 1/1995, de 24 de marzo, por el que se aprueba el texto refundido de la Ley del Estatuto de los Trabajadores. (제68.a.b.c조)

8.9 산업안전보건 관련 권리 및 직무 행사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의 면제

9. 특정 유해성 또는 위험성

9.1 생물학적 유해성

개요/인용
생물학적 유해성에 노출된 근로자의 안전보건 보호에 관한 특정 명령이 마련되어 있다.

참고자료
Real Decreto 664/1997, de 12 de mayo, sobre la proteccion de los trabajadores contra los riesgos relacionados con la exposicion a agentes biologicos durante el trabajo

9.2 화학적 유해성

9.2.1 취급, 보관, 식별표시 및 사용

개요/인용
화학적 유해성에 노출된 근로자의 안전보건 보호에 관한 특정 명령이 마련되어 있다.

참고자료
Real Decreto 374/2001, de 6 de abril, sobre la proteccion de la salud y seguridad de los trabajadores contra los riesgos relacionados con los agentes quimicos durante el trabajo

9.2.2 사용자의 안전보건에 관련한 제조자, 공급자 및 수입자의 의무

개요/인용
근로자가 사용하게 되는 화학제품과 물질의 제조자, 수입자, 공급자는 안전한 보관 및 안전하고 명확한 취급이 가능하도록 포장하고 식별표시를 부착하도록 요구된다. 사용 시 근로자가 노출되는 위험이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Ley num. 31/1995, de 8 de noviembre, de Prevencion de Riesgos Laborales (제41조)

9.3 인체공학적 유해성

개요/인용

스크린을 포함한 장비를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특정 명령이 마련되어 있다.
수동 취급 화물에 노출된 근로자 보호에 대한 특정 명령이 마련되어 있다.
모든 작업장에 적용되는 최소 안전보건 규정을 정하는 명령이 마련되어 있다.

참고자료

Real Decreto 486/1997, de 14 de abril, por el que se establecen las disposiciones minimas de seguridad y salud en los lugares de trabajo
Real Decreto 488/1997, de 14 de abril, sobre disposiciones minimas de seguridad y salud relativas al trabajo con equipos que incluyen pantallas de visualizacion
Real Decreto 487/1997, de 14 de abril, sobre disposiciones minimas de seguridad y salud relativas a la manipulacion manual de cargas que entrane riesgos, en particular dorsolumbares, para los trabajadores

9.4 물리적 유해성

9.4.1 살충제

개요/인용

살충제의 평가와 상업화 및 사용에 대한 다양한 명령이 마련되어 있다.

참고자료

Real Decreto 3349/1983, de 30 de noviembre, por el que se aprueba la Reglamentacion tecnico-sanitaria para la fabricacion, comercializacion y utilizacion de plaguicidas
Real Decreto 506/2013, de 28 de junio, sobre productos fertilizantes
Real Decreto 971/2014, de 21 de noviembre, por el que se regula el procedimiento de evaluacion de productos fitosanitarios.

9.4.2 이온화 방사선

개요/인용

이온화 방사선에 노출된 근로자의 안전보건 보호에 대한 특정 명령이 마련되어 있다.

참고자료

Real Decreto 783/2001, de 6 de julio, por el que se aprueba el Reglamento sobre proteccion sanitaria contra radiaciones ionizantes

9.4.3 진동 및 소음

개요/인용

소음 유해성에 노출된 근로자의 안전보건 보호에 대한 특정 명령이 마련되어 있다.

진동 유해성에 노출된 근로자의 안전보건 보호에 대한 특정 명령이 마련되어 있다.

참고자료

Real Decreto 286/2006, de 10 de marzo, sobre la proteccion de la salud y la seguridad de los trabajadores contra los riesgos relacionados con la exposicion al ruido

Real Decreto 1311/2005, de 4 de noviembre, sobre la proteccion de la salud y la seguridad de los trabajadores frente a los riesgos derivados o que puedan derivarse de la exposicion a vibraciones mecanicas

9.4.4 고소작업

개요/인용

고소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는 반드시 낙상을 예방하는 보호 체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Real Decreto 1215/1997, de 18 de julio, por el que se establecen las disposiciones minimas de seguridad y salud para la utilizacion por los trabajadores de los equipos de trabajo (부록 I- 6)

9.4.5 밀폐공간 내의 작업

개요/인용

작업장의 크기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위험 없는 인체공학적으로 용인된 환경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에 따른 최소 크기는 다음과 같다.

- 높이 3 미터. 단, 상업 공간과 사무실의 높이는 2.5 미터로 축소 가능

- 근로자당 2 제곱미터의 자유 표면
- 근로자당 10 입방미터의 자유 공간

참고자료
Real Decreto 486/1997, de 14 de abril, por el que se establecen las disposiciones minimas de seguridad y salud en los lugares de trabajo (부록 I- 2.1)

9.4.6 작업장 시설의 유지보수 미흡으로 인한 위험성

개요/인용
작업장의 복도, 출구, 통로, 특히 비상구는 근로자가 어떠한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작업장과 작업 장비 및 설비는 정기적으로 세척하여 적절한 위생 상태가 항시 유지되어야 한다.

사고를 유발하거나 작업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 폐기물은 빨리 제거되어야 한다.

세척 작업 그 자체가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위험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작업장과 설비는 정기적으로 유지 보수하여 작동상태에 대한 요건을 항시 충족시켜야 한다.

환기 시스템은 올바른 작동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모든 시스템 고장을 표시하는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참고자료
Real Decreto 486/1997, de 14 de abril, por el que se establecen las disposiciones minimas de seguridad y salud en los lugares de trabajo (부록 II)

9.4.7 극한 온도에 대한 노출

개요/인용
작업장의 환경 조건은 가능한 한 근로자에 불편을 유발하는 원천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극한 온도 및 습도, 갑작스런 온도 변화, 짜증나게 하는 기류, 불편한 출입문, 과다 조사(irradiation) 등을 방지해야 한다.

참고자료

Real Decreto 486/1997, de 14 de abril, por el que se establecen las disposiciones minimas de seguridad y salud en los lugares de trabajo (부록 III)

9.4.8 화재 위험성

개요/인용

작업장은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되는 화재예방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작업장은 상기 언급한 법령의 특정 규정이 다른 요건을 정하지 아니하는 한 본 섹션에서 다음과 같은 요점이 정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작업장은 최대 상주 인원수뿐 아니라 건물의 규모와 용도, 장비,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따라 소방 시스템, 화재감지기, 화재경보기 등을 적절히 설비해야 한다.

비자동 소방 장치는 접근과 사용이 용이하여야 한다. 이러한 장치는 직장 내 최소 안전보건 표지에 관한 명령 485/1997(4월 14일)에 따라 표시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Real Decreto 486/1997, de 14 de abril, por el que se establecen las disposiciones minimas de seguridad y salud en los lugares de trabajo (부록 I- 11)

9.4.9 연초류

개요/인용

작업장 내 흡연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참고자료

Ley 28/2005, de 26 de diciembre, de medidas sanitarias frente al tabaquismo y reguladora de la venta, el suministro, el consumo y la publicidad de los productos del tabaco (제7조)

9.4.10 석면

개요/인용

석면에 노출된 근로자를 위한 최소 안전보건 규정을 정하는 특정 명령이 마련되어 있다.

참고자료

Real Decreto 396/2006, de 31 de marzo, por el que se establecen las disposiciones minimas de seguridad y salud aplicables a los trabajos con riesgo de exposicion al amianto

9.4.11 나노기술 관련 위험성

9.4.12 작업장 내 에이즈 감염

9.5 심리사회적 유해성

9.5.1 심리사회적 위험성

9.5.2 직장 폭력

개요/인용

다음과 같은 행실은 법적으로 매우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한다.

- 근로자의 사생활과 존엄성을 존중하지 않은 사업주의 행동
- 연령 또는 장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차별, 또는 성별, 인종 또는 민족을 포함한 출신, 혼인 여부, 종교 또는 신념, 정치적 신념, 성적 지향, 특히 조합회원을 이유로 한 보수, 근로 시간, 교육훈련, 승진, 기타 근로 조건에 대한 유리하거나 불리한 차별이 개입된 기업의 결정
- 성희롱
- 인종 또는 민족, 종교 또는 신념, 장애, 연령, 성적 지향, 성별을 근거로 한 학대

(Real Decreto Legislativo 5/2000, de 4 de agosto, por el que se aprueba el texto refundido de la Ley sobre Infracciones y Sanciones en el Orden Social, 제8.11조~제8.13조)

고용관계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상급자 지위를 유리하게 사용하여 타인에게 적대적이거나 굴욕적인 행동을 주기적으로 보이며 희롱하는 개인은 6개월에서 2년의 징역에 처한다.

(Ley Organica 10/1995, de 23 de noviembre, del Codigo Penal, 제173.1조)

참고자료

Real Decreto Legislativo 5/2000, de 4 de agosto, por el que se aprueba el texto refundido de la Ley sobre Infracciones y Sanciones en el Orden Social (제8.11-8.13조(반복 조문))

Ley Organica 10/1995, de 23 de noviembre, del Codigo Penal (제173.1조)

9.6 기타 유해물질

참고자료

Real Decreto 665/1997, de 12 de mayo sobre la proteccion de los trabajadores contra los riesgos relacionados con la exposicion a agentes cancerigenos durante el trabajo

Real Decreto 1124/2000, de 16 de junio, que modifica Real Decreto 665/1997, de 12 de mayo, sobre la proteccion de los trabajadores contra los riesgos relacionados con la exposicion a agentes cancerigenos durante el trabajo

Real Decreto 219/2013, de 22 de marzo, sobre restricciones a la utilizacion de determinadas sustancias peligrosas en aparatos electricos y electronicos.

Real Decreto 473/2014, de 13 de junio, por el que se modifica el Real Decreto 1381/2009, de 28 de agosto, por el que se establecen los requisitos para la fabricacion y comercializacion de los generadores de aerosoles.

Real Decreto 1381/2009, de 28 de agosto, por el que se establecen los requisitos para la fabricacion y comercializacion de los generadores de aerosoles.

9.7 기계류

9.7.1 기계류 및 공구 관련 위험성

개요/인용

기계류 및 공구 사용 시 준수해야 하는 최소 안전보건 규정을 정하는 특정 명령이 마련되어 있다.

참고자료

Real Decreto 1215/1997, de 18 de julio, por el que se establecen las disposiciones minimas de seguridad y salud para la utilizacion por los trabajadores de los equipos de trabajo

9.7.2 기계류 조작자의 산업안전보건에 관련한 기계류 설계자 및 제조사의 의무

개요/인용

설계 및 생산 단계에서 준수해야 하는 여러 안전조치를 포함하는 기계류 상업화에 관한 특정 명령이 마련되어 있다.

(Real Decreto 1644/2008, de 10 de octubre, por el que se establecen las normas para la comercializacion y puesta en servicio de las maquinas, 부록 I-1.1-1.6)

기계류, 장비, 제품, 공구의 제조자, 수입자, 공급자는 각각 표기된 조건과 용도에 따라 설치 및 사용되는 경우 근로자에 위험원이 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이 요구된다.

(Ley num. 31/1995, de 8 de noviembre, de Prevencion de Riesgos Laborales, 제41조)

참고자료

Ley num. 31/1995, de 8 de noviembre, de Prevencion de Riesgos Laborales (제41조)

Real Decreto 1644/2008, de 10 de octubre, por el que se establecen las normas para la comercializacion y puesta en servicio de las maquinas (부록 I-1.1-1.6)

9.7.3 기계류 설계자, 제조자, 수입자 또는 공급자의 정보 제공 의무

개요/인용

기계류 설계자와 제조자는 정보, 경고, 기계류 사용에 관한 지침을 기술한 설명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Real Decreto 1644/2008, de 10 de octubre, por el que se establecen las normas para la comercializacion y puesta en servicio de las maquinas, 부록 I - 1.7)

제조자, 수입자, 공급자는 기계류, 장비, 제품, 원료의 안전하고 건강한 사용 및 취급에 필요한 정보를 사업주에 제공해야 한다.

(Ley num. 31/1995, de 8 de noviembre, de Prevencion de Riesgos Laborales, 제41조)

참고자료

Ley num. 31/1995, de 8 de noviembre, de Prevencion de Riesgos Laborales (제41조)

Real Decreto 1644/2008, de 10 de octubre, por el que se establecen las normas para la comercializacion y puesta en servicio de las maquinas (부록 I-1.7)

9.7.4 승인/인증된 공급자로부터 또는 승인/인증된 경우에만 기계류를 구입해야 하는 의무

개요/인용

기계류는 유럽 지침 2006/42/CE를 준수하여 설계되고 생산되어야 한다. 설계자와 제조자는 유럽 지침이 정하는 모든 요건이 적용되도록 관리하는 담당 기관에 기술 문서 일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담당 기관은 기계류가 유럽 지침의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되고 생산되었을 시 CE 형식의 인증서를 제공한다.

참고자료

Real Decreto 1644/2008, de 10 de octubre, por el que se establecen las normas para la comercializacion y puesta en servicio de las maquinas (부록 IX)

9.7.5 기계류 및 장비 유지보수

개요/인용

사업주는 작업 장비에 적절한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작업 장비가 양호한 기술적 상태를 항시 유지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유지보수에는 반드시 제조자의 지침이 참작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Real Decreto 1215/1997, de 18 de julio, por el que se establecen las disposiciones minimas de seguridad y salud para la utilizacion por los trabajadores de los equipos de trabajo (제3.5조)

9.7.5.1 적용 장비 목록

개요/인용

모든 종류의 기계류 및 공구에 명령이 적용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Real Decreto 1215/1997, de 18 de julio, por el que se establecen las disposiciones minimas de seguridad y salud para la utilizacion por los trabajadores de los equipos de trabajo (제2조)

9.8 특정 취약 근로자의 보호 규정

9.8.1 직장에서의 임신부 보호

개요/인용

위험평가는 임신부 근로자 또는 최근에 출산한 근로자가 자신과 태아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이나 공정 또는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성격과 정도 및 지속시간에 대한 확인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평과 결과에 따라 안전보건에 대한 위험과 근로자의 임신과 모유수유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밝혀지면, 사업주는 관련 근로자의 필요성에 따라 환경이나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것을 통해 이러한 위험에 대한 노출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은 조정이 불가한 상황에서 작업 환경이 임신부 근로자 또는 태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국립사회보장원의 의료기관이 이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임신부 근로자의 상태에 적합한 다른 업무 또는 기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임신부 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에 대한 어떠한 위험도 없는 업무의 목록을 결정하여야 한다.

업무나 기능의 전환은 기능적 이동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칙과 기준에 따라 실시되며,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여 이전 업무로 복귀할 수 있을 때까지 필요한 기간 동안 유지된다.

만약 전항에서 정하는 규칙을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임신부 근로자에 적합한 업무 또는 지원역할이 부재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를 다른 작업그룹이나 범주로 이속시킬 수 있다. 이때 근로자는 기존 업무 위치에서 수령한 것과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유지한다.

기술적으로 또는 객관적으로 이속이 불가할 경우, 근로자법 제45.1.d조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보장하는 데 필요하거나 근로자가 기존의 업무 위치 또는 이와 동등한 위치로 복귀하기 불가능한 상태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 임신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근로자와의 계약을 유예할 수 있다.

임신부 근로자는 태아 검사를 받거나 출산준비 기법을 익히기 위한 시간에 대해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사전 통지하고 근무시간 중에 이 같은 활동을 해야 할 필요성을 사업주에 정당화할 것이 요구된다.
(Ley num. 31/1995, de 8 de noviembre, de Prevencion de Riesgos Laborales, 제26조)

이 법은 임신부와 수유 여성, 태아와 수유 기간에 있는 유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공정, 환경에 관한 비망라적 목록을 규정한다.

이 법은 임신부와 수유 여성이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물질과 작업환경에 관한 비망라적 목록을 규정한다.
(Real Decreto 39/1997, de 17 de enero, por el que se aprueba el Reglamento de los Servicios de Prevencion, 부록 VII, VIII)

참고자료
Ley num. 31/1995, de 8 de noviembre, de Prevencion de Riesgos Laborales (제26조)
Real Decreto 39/1997, de 17 de enero, por el que se aprueba el Reglamento de los Servicios de Prevencion (부록 VII, VIII)

9.8.2 직장에서의 수유 여성 보호

개요/인용
법에 의해 임신부 근로자에 제공되는 보호조치는 수유 여성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Ley num. 31/1995, de 8 de noviembre, de Prevencion de Riesgos Laborales, 제26.4조)

이 법은 임신부와 수유 여성, 태아와 수유 기간에 있는 유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공정, 환경에 관한 비망라적 목록을 규정한다.

이 법은 임신부와 수유 여성이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물질과 작업환경에 관한 비망라적 목록을 규정한다.
(Real Decreto 39/1997, de 17 de enero, por el que se aprueba el Reglamento de los Servicios de Prevencion, 부록 VII, VIII)

참고자료
Ley num. 31/1995, de 8 de noviembre, de Prevencion de Riesgos Laborales (제26.4조)
Real Decreto 39/1997, de 17 de enero, por el que se aprueba el Reglamento de los Servicios de Prevencion (부록 VII, VIII조)

9.8.3 특정 작업, 과업 또는 교대근무에 대한 여성의 접근 제한

개요/인용
이 법은 임신부와 수유 여성이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물질과 작업환경에 관한 비망라적 목록을 규정한다.

참고자료
Real Decreto 39/1997, de 17 de enero, por el que se aprueba el Reglamento de los Servicios de Prevencion (부록 VIII)

9.8.4 특정 작업, 과업 및 교대근무에 대한 연령에 따른 제한

개요/인용
사업주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업무에 배정하기 전에, 그리고 그 작업환경을 크게 변경하기에 앞서 당해 미성년자가 수행할 과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특정 위험을 수반하며 미성년자의 안전보건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활동의 성격, 정도, 지속시간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평가에 있어 미성년자의 안전, 보건, 발달에 대한 경험 부족, 잠재적 위험 평가에 대한 미숙함, 아직 완전히 성장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 기인한 특정 위험을 특별 고려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사업주는 미성년자와 그들의 부모에 작업이 수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과 미성년자의 안전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강구한 모든 조치에 관하여 알려야 한다.

상술한 내용을 참작하여 정부는 특정 위험이 수반되는 업무에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데 대한 제한사항을 설정할 것이다.
(Ley num. 31/1995, de 8 de noviembre, de Prevencion de Ri esgos Laborales, 제27조)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야간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고용사회보장부의 제안과 가장 대표적인 노동조합과의 협의에 따라 정부가 건강에 해롭거나 고통스럽거나 미성년자의 보건과 전문적/개인적 발전을 위협하거나 유해한 것으로 선포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

18세 미만의 미성년은 초과 근무가 금지되어 있다.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공개 연예 활동은 근로당국이 인정하는 특별 사례에 한하여 허용된다. 단, 미성년자의 신체 건강이나 전문적/개인적 발전에 대한 위험이 없어야 한다. 구체적 활동을 위한 허가서가 작성 및 발급되어야 한다.
(Real decreto legislativo num. 1/1995, de 24 de marzo, por el que se aprueba el texto refundido de la Ley del Estatuto de los Trabajadores, 제6조)

참고자료
Ley num. 31/1995, de 8 de noviembre, de Prevencion de Riesgos Laborales (제27조)
Real decreto legislativo num. 1/1995, de 24 de marzo, por el que se aprueba el texto refundido de la Ley del Estatuto de los Trabajadores. (제6조)

10. 사고/준사고 및 질병의 기록, 신고 및 조사

10.1 업무상 사고, 아차사고 및 업무상 질병의 원인을 기록 및 조사할 의무

10.1.1 업무상 사고

개요/인용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근로자가 1일 이상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사고/질병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참고자료
Ley num. 31/1995, de 8 de noviembre, de Prevencion de Riesgos Laborales (제23.1.e조)

10.1.2 아차사고

10.1.3 업무상 질병

개요/인용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근로자가 1일 이상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사고/질병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참고자료

Ley num. 31/1995, de 8 de noviembre, de Prevencion de Riesgos Laborales (제23.1.e조)

10.2 산업안전보건 당국에 업무상 사망 또는 상해를 신고해야 하는 사업주의 의무

개요/인용

사업주는 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근로자의 건강에 손상을 입힌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에 대해,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할 근로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참고자료

Ley num. 31/1995, de 8 de noviembre, de Prevencion de Riesgos Laborales (제23.3조)

11. 산업안전보건 법령의 감독 및 시행

11.1 산업안전보건 감독관 임명

개요/인용

근로감독 및 사회보장에 관한 특별법이 마련되어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근로조사단은 근로 규칙의 시행을 관리하고 필요에 따라 근로 관련 문제를 중재, 중개, 조정해야 할 책임이 있는 공공 서비스 단체이다.

참고자료

Ley 42/1997 de 14 de noviembre Ordenadora de la Inspeccion de Trabajo y Seguridad Social (제1조)

Real Decreto 707/2002, de 19 de julio, por el que se aprueba el Reglamento sobre el procedimiento administrativo especial de actuacion de la Inspeccion de trabajo y Seguridad social

Real Decreto 464/2003, de 25 de abril por el que se modifica el Real Decreto 707/2002, de 19 de julio, por el que se aprueba el Reglamento sobre el procedimiento administrativo especial de actuacion de la Inspeccion de Trabajo y Seguridad Social

11.2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의 권한

11.2.1 작업장 출입권

개요/인용
감독관은 사전 통지 없이 아무 시간에나 작업장을 자유롭게 출입할 권한이 있다.

감독관이 점검을 실시할 시 사업주 또는 그 대리인에게 감독관의 존재를 알리도록 하되, 이러한 행위가 직무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는 경우에는 알리지 않는다. 감독관은 법정 규정의 올바른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모든 조사 및 검사를 실시할 권한이 있다.

참고자료
Ley 42/1997 de 14 de noviembre Ordenadora de la Inspeccion de Trabajo y Seguridad Social (제5.1조)

11.2.2 검사, 시험 및 문의할 권한

개요/인용
근로감독관은 법정 규정의 올바른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모든 조사 및 검사를 실시할 권한이 있다. 감독관의 다른 권한은 다음과 같다.

- 증인, 사업주, 근로자에 법 적용과 관계된 모든 문제에 관한 정보 요구. 점검 받는 작업장에 있는 모든 인원의 신원 요구
- 사업주 또는 그 대리인과 관리자, 근로자, 점검 받는 작업장으로부터 사회적 혜택을 받는 신청자 또는 수혜자, 또는 감독관 대리로 임명된 공무원의 출석 요구
- 기업 문서 검토
- 사업주가 법에 따라 유지하도록 요구된 장부, 기록, 문서, 정보는 감독관이 요구할 시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
- 작업장에서 사용 또는 취급하는 원료 및 물질의 샘플 채취 또는 수거하여 측정, 사진촬영, 영상촬영 또는 기타 증거물로 작성. 증거 수집은 사업주에 통보되어야 한다.
- 점검의 모든 단계에서 점검이 추구하는 목표에 적절하고 비례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예방조치를 도입하여 전항에서 언급한 문서의 파괴, 소실, 변경을 방지한다.

참고자료
Ley 42/1997 de 14 de noviembre Ordenadora de la Inspeccion de Trabajo y Seguridad Social (제5.3조)

11.2.3 조사 권한

11.2.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조언할 의무

개요/인용
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안전보건 법령 준수를 위한 최선의 방법에 관한 자문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참고자료
Ley num. 31/1995, de 8 de noviembre, de Prevencion de Riesgos Laborales (제9.1.b조)

11.3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의 시행 권한

11.3.1 명령 또는 통지의 교부 권한

개요/인용
근로감독관은 명령을 내려 사업주가 특정 조치 또는 절차를 취할 것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참고자료
Ley num. 31/1995, de 8 de noviembre, de Prevencion de Riesgos Laborales (제43.1조)
Ley 42/1997 de 14 de noviembre Ordenadora de la Inspeccion de Trabajo y Seguridad Social (제7.1-3조)

11.3.2 금전적 벌칙을 부과할 권한

개요/인용
감독관은 제재 절차를 개시할 권한이 있다.
(Ley 42/1997 de 14 de noviembre Ordenadora de la Inspeccion de Trabajo y Seguridad Social, 제7.4조)

감독관은 금전적 벌칙을 부과할 권한이 있다.
(Ley num. 31/1995, de 8 de noviembre, de Prevencion de Riesgos Laborales, 제43.2조)

참고자료

Ley num. 31/1995, de 8 de noviembre, de Prevencion de Riesgos Laborales (제43.2조)

Ley 42/1997 de 14 de noviembre Ordenadora de la Inspeccion de Trabajo y Seguridad Social (제7.4조)

11.3.3 면허 또는 승인을 취소 또는 정지할 권한

개요/인용

감독관은 사업주가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담당 행정부에 사회적 혜택을 중단할 것을 촉구할 권한이 있다.

참고자료

Ley 42/1997 de 14 de noviembre Ordenadora de la Inspeccion de Trabajo y Seguridad Social (제7.7조)

11.3.4 위험한 작업의 중지를 요구할 권한

개요/인용

감독관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막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위험한 작업의 중지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

참고자료

Ley num. 31/1995, de 8 de noviembre, de Prevencion de Riesgos Laborales (제44조)

Ley 42/1997 de 14 de noviembre Ordenadora de la Inspeccion de Trabajo y Seguridad Social (제7.10조)

11.3.5 기소 개시 권한

개요/인용

감독관은 상급자에 노동 법원 기소 절차를 개시할 것을 상정할 권한이 있다.

참고자료

Ley 42/1997 de 14 de noviembre Ordenadora de la Inspeccion de Trabajo y Seguridad Social (제7.12조)

11.3.6 기소 수행 권한

11.3.7 기타 집행 권한

개요/인용
감독관은 근로 법령이 정하는 기타 권한을 가질 수 있다.

참고자료
Ley 42/1997 de 14 de noviembre Ordenadora de la Inspeccion de Trabajo y Seguridad Social (제7.13조)

11.4 법원의 제재 조치

11.4.1 법인에 대한 금전적 벌칙

개요/인용
최소: 40 EUR [52,4593 USD]
최대: 819.780 EUR [1.075.191,42 USD]

비고/해설
사업주의 위험예방에 관한 의무 준수 불이행은 행정적 책임,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손해에 대한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이 뒤따른다.
(산재위험 예방에 관한 법, 제42.1조)

참고자료
Real Decreto Legislativo 5/2000, de 4 de agosto, por el que se aprueba el texto refundido de la Ley sobre Infracciones y Sanciones en el Orden Social (제40.2조)

11.4.2 자연인에 대한 금전적 벌칙

개요/인용
최소: 40 EUR [52,4593 USD]
최대: 819.780 EUR [1.075.191,42 USD]

참고자료
Real Decreto Legislativo 5/2000, de 4 de agosto, por el que se aprueba el texto

refundido de la Ley sobre Infracciones y Sanciones en el Orden Social (제40.2조)

11.4.3 비금전적 제재

개요/인용
법원은 매우 중대한 위반에 부과된 제재에 대하여 정부 관보에 게재를 통한 공보를 명령해야 한다.

참고자료
REAL DECRETO 597/2007, de 4 de mayo, sobre publicacion de las sanciones por infracciones muy graves en materia de prevencion de riesgos laborales

11.4.4 형사상 책임

개요/인용
한 개인이 타인의 사망에 중대 과실을 범하였을 경우 형법에 따라 과실치사죄로 기소될 수 있다.

비고/해설
따라서 작업장의 사업주, 산업안전보건 감독관, 산업안전보건 행정 책임자 또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로 인해 근로자 또는 제3자의 사망을 유발하는 경우 과실치사죄로 기소될 수 있다.

참고자료
Ley Organica 10/1995, de 23 de noviembre, del Codigo Penal (제142조)

11.4.5 자연인에 대한 징역 기간

개요/인용
최소: 1년
최대: 4년

참고자료
Ley Organica 10/1995, de 23 de noviembre, del Codigo Penal (제142조)